## 급식물품구매(부식) 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O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7,8월분 울산초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품목별 물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61,708,630원(추정가격 56,098,755원+ 부가세 5,609,875원)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납 품 기 한	2024년 7월 1일 ~ 7월 24일까지, 2024년 8월 26일~8월 30일까지
납 품 조 건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소)

###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6. 21.(금) 10:00	2024. 6. 26.(수) 10:00	2024. 6. 26.(수) 11:00	입찰집행관 PC

<sup>※</sup>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sup>※</sup>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수,축산물 식.잡,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자여야 합니다. [지사(지점)투찰 불허]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자.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차. 급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차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비치)여야 합니다.

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자동추첨되며, 이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 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44-7674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2-244-7674(내선 810)

##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울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울산초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물품(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 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

- 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다.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 3. 이물질 혼입 여부
  -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 6. 포장상태
  -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
  -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u>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u>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 나. 포장상태 불량
-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 바. 서류 미제출
- 사. 대면검수 미이행
- 아. 이물질 혼입
-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일반 품질 불량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b>1</b> 품질		포장 및 외관 불량		
(Quality)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비끄교사기원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법적표시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b>2</b> 1 1 7 1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b>②</b> 납기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Delivery)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3 위생 및 안전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Safety)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b>4</b> 서비스(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Responsiveness)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b>⑤</b>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sup>※</sup>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sup>※</sup>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붙임 1] 수의계약 각서

울산초등학교장 귀하

	각	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업체명 :		
		대표자 :	(인)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 비속인 사업자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2]

귀하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Hŀスっ)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사업명)	린지하고 하는 계사기 하라 제고	[]물품[]기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약 운영요령/제2절에 의한 수의계익	
계약상대	성명 자	소속	[ ] 개인 [ ] 법인
" ' 0 " (확인인)		주소	[]단체[]기타
(5 1 1 1	선택시 	十二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준	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b>직계존속·비속에</b>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2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히	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2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해당없음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그 그 에 그 그 아니 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바즈기과(가히사)이 미히사 소	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소비소에 기에 기아니오
	해당하는가?		¬ '' ¬ '' [ ] 해당없음
		,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	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즉	<b> 계존속·비속</b> 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	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b> 존속・비속</b> 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	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예[]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
(8)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사본금 종액의 100분의 50 이 해당하는가?	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년 <b>제</b> )에
	에정이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시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2024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명 또는 인)

계약상대자(확인인)